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648
------	-----

2023.04.26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9일, 김지향 의원 외 23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4.26.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지향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과학관의 운영현황에 맞춰 시설물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관람료 감면 등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·운영하기 위한 관람료

감면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과학관의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,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현재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내용 수정  
(안 제2조 및 제14조).

나. 관람료 면제 외 감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신설(안 제6조제2항).

다. 전문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 
조례」 제117조(관장)에 맞춰 권한의 위임 조항 신설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)의 시설물 관련 규정을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 명칭 등에 맞춰 정비하고, 관람료 감면에 대한 위임 규정을 확대 하며, 과학관 운영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서울특별시립과학관 현황

-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

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관(2017.5.19.)됨.

### <과학관 개요>

○ 위 치	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	
○ 규 모	부지면적 25,875㎡ / 연면적 12,376㎡ / 전시면적 4,260㎡	
○ 총공사비	423억 4천 9백만원(국비 70%, 시비 30%)	
○ 예산현황	30억 1천 7백만원(2023년 기준)	
○ 주요시설		
층 별	면적(㎡)	주 요 시 설
옥 상	3,429.97	옥상정원, 데크쉼터, 태양광 시설
지상 3층	1,528.09	상설전시실(R), 1교육실(생물), 2교육실(화학), 3교육실(지구과학), 교육운영사무실, 북&톡(대기실)
지상 2층	3,429.97	상설전시실(O, B), Yy어린이전시실, 열린방(자원봉사실), 직원사무실, 전체관측실, 데크쉼터
지상 1층	4,217.34	상설전시실(G), Y어린이전시실, 토네이도, 메이커스튜디오, 사이언스홀(강당), 사이언스숍, 도서실, 4교육실(물리), 운영사무실, 아이디어 제작소, 수장고, 안내/매표소, 아기쉼터
지하 1층	3,201.02	주차장, 방재실, 기계실, 전기실, 직원휴게실, 샤워장

- 개관 이후 2023년 3월까지 관람객은 총 74만 9천여명이며, 관람료 수입은 4억 7천 9백여만원임.

### <과학관 연도별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 현황>

(단위 : 명, 천 원)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.3.	합계
관람객수	170,585	213,190	216,987	29,391	33,717	66,589	19,241	749,700
관람료 수입	107,196	113,530	106,327	20,511	38,218	70,394	23,377	479,553

- 한편, 올해 11월에는 AI, VR/AR, 홀로그램 등 최신 로봇과학기술 체험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과학관의 분관으로 개관될 예정임.

## <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요>

- 위 치 : 서울시 도봉구 창동 1-25
- 규 모 : 부지면적 2,500㎡, 연면적 7,405㎡, 전시면적 2,000㎡,
- 총공사비 : 416억 9천 7백만원(시비 100%)
- 주요시설

층 별	면적(㎡)	주 요 시 설
지상 4층	828.39㎡	기획전시실
지상 3층	1,192.66㎡	상설전시실 1·2
지상 2층	1,074.04㎡	체험공간, 사무실, 회의실
지상 1층	1,003.38㎡	로비, 카페, 시모빌리티존, 유지엄샵, 편의시설
지하 1층	1,399.89㎡	주차장, 방재센터
지하 2층	1,906.99㎡	주차장, 기계·전기실, 정화조, 수장고

### 다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#### (1) 시설 명칭 현행화(안 제2조, 안 제14조)

- 개정안은 과학관의 대관 시설물과 편의시설 명칭을 각각 현재 사용 목적과 명칭에 맞춰 현행화함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“대관자”란 시설물(기획전시실, 세미나실 등)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·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의무실, 수유실, 유아차·휠체어 대여소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(전시실, 강당 등)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&lt;삭 제&gt;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- 현재 대관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‘전시실, 강당’ 이나 조례에서는 ‘기획전시실, 세미나실’ 로 표기하면서 과학관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비함(안 제2조).
- 또한, 의약품 비치 외에 의무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무실의 명칭을 당직실로 변경하고 관람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‘판매시설 등’ 에서 의무실을 삭제함(안 제14조).
- 다만, 2022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(2022.4.25.~5.30.)에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무실 운영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(2022.12.)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감사 지적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시됨.

(2) 관람료 감면에 대한 시장 위임 규정 정비(안 제6조)

- 개정안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u>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
-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은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기준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상세한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, 조례에서는 관람료를 성인 2천원,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으로 정하고 있음(별표).

▶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  
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▶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7조(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)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구분	금액		비고
	개인	단체(30명 이상)	
어른	4천원	3천원	20세 ~ 64세
청소년	2천원	1천5백원	13세 ~ 19세
어린이	2천원	1천5백원	7세 ~ 12세
노인	2천원	1천5백원	65세 이상
장애인	2천원	1천5백원	
국가유공자	2천원	1천5백원	

- 현행 조례에는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감액에 대해서는 ‘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’ 과 관련된 한시적 감액규정 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.
- 이에, 개정안은 관람료 면제에 관한 시장 위임 규정을 관람료 감면 전반으로 확대 정비함.

-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람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.
- 그러나 관람료 감면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이 없어야 하고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조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<sup>1)</sup> 시장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수정이 요구됨.

### (3) 권한의 위임(안 제18조 신설)

- 개정안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
  - ▶ 관람료 감면, ▶ 대관 허가와 대관료 감면, ▶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, ▶ 위탁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1항<sup>2)</sup>에 따르면, 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

1) 이용료 감면 요건은 실질적인 집행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고 이용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, 공공시설의 목적,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감면 대상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인데,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”는 어떠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, 사용자 감경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(법제처 2020. 8. 4. 의견20-0185 의견 제시 사례)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<sup>3)</sup>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, 과학관의 시설 운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.

- 다만, 권한 위임은 민원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, 일상적인 반복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위임<sup>4)</sup>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.
- 즉, 개정안에 따를 경우 관장이 관람료 감면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람료 감면을 스스로 결정·집행하게 되므로 위임자인 단체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.
- 이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위임 내용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함.

## 라.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과학관의 대관 시설과 편의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보임.

---

3)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합의제 행정기관, 자문기관을 말함.

4)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,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.

- 또한,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관람료 감면과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자율과 통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수정안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-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,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함.

###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관람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, 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등으로 구체화함(안 제6조).
-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개관 및 휴관, 관람료 감면,

대관허가와 대관료 감면,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, 판매시설 등의  
설치·운영으로 제한함(안 제18조).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4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26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함.

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관람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, 과학의 날 · 어린이 날 · 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등으로 구체화함(안 제6조).
-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개관 및 휴관, 관람료 감면, 대관 허가와 대관료 감면,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, 판매시설 등의 설치 · 운영으로 제한함(안 제18조).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10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

11. 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

12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
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권한”을 “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
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
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
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9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 [조례 제710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함]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<u>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p> <p>10.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</p> <p>11. <u>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</u></p> <p>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</p> <p>2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 제5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</p> <p>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</p> <p>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제18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----- -----.</p> <p>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</p> <p>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</p> <p>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</p> <p>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</p> <p>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</p> <p>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</p>
--	--	--

##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(기획전시실, 세미나실 등)” 을 “(전시실, 강당 등)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10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

11. 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

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
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제3호 중 “의무실, 수유실, 유아차·휠체어 대여소” 를 “수유실, 유아차·  
휠체어 대여소” 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
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 
운영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
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
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
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  략)</p> <p>3. “<u>대관자</u>”란 시설물(<u>기획전시실, 세미나실 등</u>)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</p> <p>4. (생   략)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  략)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>9. (생   략)</p> <p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(<u>전시실, 강당 등</u>)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</p> <p>10. <u>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</u></p> <p>11. <u>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</u></p> <p>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</u></p>

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[조례 제710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·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3. 의무실, 수유실, 유아차·휠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4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(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수유실, 유아차·휠체어 대

체어 대여소

4. (생략)

<신설>

여소

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
4.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
5.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
6.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·운영